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94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권칠승 · 한정애 · 김 윤
김기표 · 신정훈 · 소병훈
김준형 · 송재봉 · 안태준
강준현 · 김승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민사 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민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사용된 일부 용어는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거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특히 제148조와 제149조의 “未定한”, 제209조제2항의 “直時”, 제218조의 “까스管”, 제574조의 “不足되는” 등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용어들은 명확한 사전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현행 국어 어문 규범과 괴리되어 있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

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중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표준적 표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한자어 등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1편 제2장의 제목 및 제148조 등).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장의 제목 “人”을 “사람”으로 한다.

제148조 중 “未定한”을 “확정되지 않은”으로 한다.

제149조 중 “未定한”을 “확정되지 않은”으로 한다.

제195조 중 “받어”를 “받아”로 한다.

제209조제2항 중 “直時”를 “즉시”로 한다.

제218조제1항 본문 중 “까스관”을 “가스관”으로 한다.

제574조 중 “不足되는”을 “부족한”으로 한다.

제1034조제1항 본문 중 “相續財産으로서”를 “상속재산으로써”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第2章 人</u>	<u>第2章 사람</u>
第148條(條件附權利의 侵害禁止) 條件있는 法律行爲의 當事者는 條件의 成否가 <u>未定한</u> 동안에 條件의 成就로 因하여 생길 相 對方의 利益을 害하지 못한다.	第148條(條件附權利의 侵害禁止) ----- ----- <u>확정되지 않</u> <u>은</u> ----- -----.
第149條(條件附權利의 處分等) 條 件의 成就가 <u>未定한</u> 權利義務 는 一般規定에 依하여 處分, 相 續, 保存 또는 擔保로 할 수 있 다.	第149條(條件附權利의 處分等) - ----- <u>확정되지 않은</u> - ----- ----- --.
第195條(占有補助者) 家事上, 營 業上 其他 類似한 關係에 依하 여 他人의 指示를 <u>받아</u> 物件에 對한 事實上의 支配를 하는 때 에는 그 他人만을 占有者로 한 다.	第195條(占有補助者) ----- ----- ----- <u>받아</u> --- ----- ----- --.
第209條(自力救濟) ① (생 략)	第209條(自力救濟) ① (현행과 같 음)
② 占有物이 侵奪되었을 境遇 에 不動産일 때에는 占有者는 侵奪後 <u>直時</u> 加害者를 排除하 여이를 奪還할 수 있고 動産일	② ----- ----- ----- <u>즉시</u> ----- -----

때에는 占有者は 現場에서 또
는 追跡하여 加害者로부터 이
를 奪還할 수 있다.

第218條(水道等 施設權) ① 土地
所有者는 他人의 土地를 通過
하지 아니하면 必要한 水道, 疏
水管, 가스관, 電線等を 施設할
수 없거나 過多한 費用을 要하
는 境遇에는 他人의 土地를 通
過하여 이를 施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因한 損害가 가장
적은 場所와 方法을 選擇하여
이를 施設할 것이며 他土地의
所有者의 請求에 依하여 損害
를 補償하여야 한다.

② (생 략)

第574條(數量不足, 一部滅失의 境
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前2
條의 規定은 數量을 指定한 賣
買의 目的物이 不足되는 境遇
와 賣買目的物의 一部가 契約
當時에 이미 滅失된 境遇에 買
受人이 그 不足 또는 滅失을
알지 못한 때에 準用한다.

第1034條(配當辨濟) ① 限定承認
者는 第1032條第1項의 期間滿

-----.

第218條(水道等 施設權) ① ----

---- 가스관-----

-----.

-----.

② (현행과 같음)

第574條(數量不足, 一部滅失의 境
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 부족한 -----

-----.

第1034條(配當辨濟) ① -----

了後에 <u>相續財産으로서</u> 그 期間內에 申告한 債權者와 限定承認者가 알고 있는 債權者에 對하여 各債權額의 比率로 辨濟하여야 한다. 그러나 優先權 있는 債權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② (생략)	----- <u>상속재산으로써</u> ----- ----- ----- ----- -----. -----. ② (현행과 같음)
--	--